질의서에 대한 회신

[질의내용]

- 1. 2011년도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한 네팔 구직대기자들의 집회시위 관련 현지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의 송부요청
- 2. 2011년도 네팔근로자 선발 당시 인력수요 예측문제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 및 15,000명 선발 이유
- 3. 2011년도 네팔 인력선발 수요예측 문제, 현지에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한 귀 기관의 책임문제
- 4. 2011년도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로서 구직대기중인 자들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등 귀 기관의 대책

[답변사항]

○ 우선, 고용허가제의 발전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귀 단체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질의 "1"에 대하여

- 11년도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한 네팔 구직대기자*들은 금년도에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해 새로운 송출인력을 선발할 경우, 자신들의 한국 취업 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13년도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 '11년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 15,000여명 중 5,400여명이 구직대기중
- 이와 관련하여 우리 공단의 EPS센터가 네팔 노동고용부 및 송출기관과 수 차례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 다만, 이를 위해 작성한 자료 등은 국가간의 외교적인 사항과 관련된 것 으로서 보내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 3"에 대하여

- 한국어능력시험 선발인원은 국내의 인력수요, 해당국가의 쿼터, 3배수 알선을 위한 구직자 명부확보 여부, 당시의 구직대기자 수, 다른 송출국가의 한국어능력시험 합격률, 기타 특별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따라서, 정확한 수요를 판단하여 인력선발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특히, '11년도에는 베트남의 불법체류율 증가에 따라 해당 국가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이 잠정중단 되었던 점과 필리핀, 태국 등의 합격률 저조로 구직자 명부확보(3배 알선)가 어려웠던 점, 구직 자명부 부족시 중소기업의 애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숙고하여 선발인원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4"에 대하여

- 고용허가제관련 한국어능력시험은 일종의 자격시험이며, 합격 후 2년의 유효기간 내에 구직등록을 하고, 이로부터 최대 2년내에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입국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3. 9월 현재 네팔의 '11년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 중 구직대기 자는 5,4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금년 4/4분기에 취업이 될 것으로 보이나, '14. 3월까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대부분 구직자명부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 <참고> '11년 송출국가 전체 합격자의 평균 근로계약 체결율이 56%인데 비해, 네팔 합격 자는 62%로서 높은 수준임
- 현행 고용허가제 송출업무지침 및 MOU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2년으로, 네팔에 대해 동 시험 합격자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다른 송출국가도 모두 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험시행 등 제도 운용상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선례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특히, 시험 유효기간 연장시 구직대기자의 어학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취업함에 따라 사업주와의 의사소통 능력 부족이 심화 될 것으로 보여 제도의 도입취지에 배치되고,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이 반드시 취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시험 시행 공고시 응시자들에게 이미 고지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네팔의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가 취업하지 못하고 유효 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험에 다시 응시하여야 하고, 현재 구직 대기 자들 대부분은 내년 3월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므로, 금년도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네팔근로자 송출과정에 오히려 차질이 빚어 지게 되어 불이익이 돌아갈 우려가 있습니다.
- 이에, 우리 공단은 네팔 노동고용부 및 송출기관과 금년 한국어시험 실 시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고 금년도 한국어 시험 일정을 협의한 결과, 10월에 시험을 실시키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 다만, 금년도 시험합격자 중 내년도에 구직자 명부가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산업종을 제외한 제조업종 시험 합격자의 도입 시기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하여 '11 합격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현 구직자 명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3월 이후로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고용허가제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